

경찰 마약수사전담팀 업무량 분석*

A Study on the Workload of Drug Investigation Team in the Police

정 응**

차 례

- | | |
|----------------------|-----------------------|
| I. 서론 | IV. 조사 설계 및 업무량 분석 결과 |
| II. 이론적 배경 | V. 결론 |
| III. 마약류범죄 추세와 대응 실태 | |

• 국문요약 •

본 연구는 최근 증가하는 마약류범죄의 효과적인 대응을 위해 경찰의 마약전담 적정 수사인력 연구 필요성을 제기하면서, 마약수사팀의 수사 소요인력 산출을 위한 기초 연구로서 수사 프로세스의 시각에서 마약류사건 처리에 소요되는 수사 업무량을 추정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전국 마약수사팀 수사관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응답 수사관 183명의 설문결과를 토대로 마약류사건 수사 업무량에 대한 분석을 진행하였다.

분석결과를 보면 우선 초기수사 단계에서 정보원으로부터 첩보수집활동에 8.892시간, 외근에 의한 첩보수집에 7.366시간, 내근 첩보수집 5.640시간, 첩보수집관련 서류작업에 2.396시간이 소요된 것으로 추정되었

다. 본 수사 단계에서는 검거 전 수사자료 수집을 위한 서류작업으로서 통신자료요청 1.399시간, 통신사실확인자료요청 1.816시간, 영장신청에 2.046시간이 소요되었으며, 검거를 위한 추적수사활동에서는 통신수사 13.780시간, 탐문·감시 15.641시간, 위장거래활동에 4.719시간이 걸린 것으로 추정되었다. 검거 전 확보된 수사자료의 분석에서는 9.778시간이 소요되고 분석결과에 대한 보고서 작성 등 관련 서류작업에도 8.435시간이 소요되었다. 공조수사에서는 국제공조의 경우 2.071시간, 국내공조의 경우 2.778시간이 소요된 것으로 나타났다.

본격적인 대상자 검거 단계에서 우선 현장 출동준비에 1.923시간, 현장이동 및 검거에

* 이 글은 치안정책연구소 연구보고서(2017b)의 전반부(업무량 분석) 내용을 수정·보완한 것임.

** 경찰대학 치안정책연구소 연구관

8.483시간, 사건현장에서의 증거물확보에 2.135시간, 현장 증거물 수색·채증 등 관련 서류작업에 2.356시간이 소요된 것으로 추정되었다. 검거 후 관계자 조사 단계에서는 피의자조사에 6.680시간, 공범 및 상하선 등 조사 7.316시간, 참고인조사 3.596시간, 피해자조사 0.865시간 등으로 나타났다. 끝으로 수사 마무리 단계에서 최종 수사서류의 작성·검토 등 송치서류의 정리에 7.420시간, 피의자의 검찰송치(신병호송)에 3.605시간이 소요된 것으로 추정되었다. 세부 소요시간 추정에서 가장 많은 시간이 소요된 업무는 외근에 의한 탐문·감시(15.641시간)와 통신수사(13.780시간). 검거 전 수사자료의 분석(9.778시간) 등의 순이었으며, 마약류 사건 1건당 소요되는 총 시간은 평균 181.369시간(피의자 1인 기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관서별로 보면 지방청 수사대의 경우 평균 182.805, 경찰서 마약팀의 경우 179.298시간으로 지방청 수사대가 약간 큰 것으로 나타났다. 실질적으로 두 집단 간에 거의 차이가 없었다. 이는 관서 유형에 관계없이 마약수사가 대체로 인지수사에 기초한 팀 단위 수사를 통해 이루지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마약유형별로 보면, 향정신성의약품 사건이 가장 큰 183.429시간이 소요되고, 다음으로 대마 180.602시간, 마약 121.776시간의 순으로 나타났다. 필로폰 등 향정사건은 대마사건과 함께 전체 소요시간 평균과 거의 차이가 없었으나, 양귀비와 같은 마약사건은 타 유형에 비해 소요시간이 적은 특징을 보이고 있다.

◆ 주제어 : 마약류범죄, 마약수사팀, 수사 프로세스, 수사 업무량

I. 서론

최근 우리나라는 경제성장과 개방화의 진전 속에 국내 마약류사범이 2015년 들어 11,916명 검거됨으로써 최초로 1만 명을 넘어선 이래 2016년에도 전년 대비 19.3% 증가한 14,214명이 검거되는 등 마약류범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나타내고 있다. 아울러 그 유통구조 면에서 단순한 오프라인 거래 외에 인터넷·SNS를 이용하는 등 범죄 수법이 다변화·지능화 되는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마약류사범 규모 증가와 범죄 수법의 지능화 추세에 비추어 볼 때, 마약류범죄의 대응에 필요한 경찰 마약수사전담팀(이하 마약수사팀)의 업무 부담 또한 향후 지속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마약류사범 증가와 범죄 수법의 지능화 추세 외에도 마약류범죄가 갖는 고유한 특징으로 인해 현재 마약수사팀은 적정한 수사인력의 확보가 매우 긴요한 시점에 있다. 즉 마약류범죄는 비교적 일정 지역 내에 국한되는 폭행사범 등과 달리 대부분 해외 밀반입에서 투약까지 유통과 소비구조가 매우 넓은 광역성 범죄이다. 또한 마약류범죄는 대표적인 암수범죄로서 그 실효적 대응을 위해서는 전국적 추적수사와 깊이 있는 첩보활동이 수반되어야하기 때문에 여기에 필요한 적정 규모의 수사인력 확보가 요청되는 것이다.

적정 수사인력 확보를 통한 마약류범죄 전담 수사체계를 강화하여 단순 투약자 검거에서부터 밀반입·제조·유통 조직에 대한 추적수사를 전개해야할 필요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경찰 마약수사팀은 아직까지 국내 유입 마약류 확산 방지 및 마약사범 근절을 기대할 수 있는 수준의 조직 내지 적정 인원을 갖추지 못한 채 운영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처럼 마약류 유통과 마약류사범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마약류범죄의 효과적인 대응을 위한 경찰의 마약전담 적정 수사인력에 대한 연구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바, 본 연구는 마약수사팀의 적정 수사소요인력 규모를 산출을 위한 기초 연구로서 마약류사건 처리에 소요되는 수사 업무량을 추정하는 데에 그 목적을 두고자 한다.

본 연구는 마약류범죄 관련 수사업무 중에서 현재 경찰관서의 마약수사팀이 담당하고 있는 마약류범죄 수사업무를 대상으로 한다. 여기서 경찰관서의 마약수사팀이라 함은 일선 경찰서 마약수사팀 및 지방청 마약수사대의 마약수사팀을 의미한다. 따라서 연구 범위는 경찰서 및 지방청의 “마약수사팀”에서 처리하는 마약류범죄 수사업무에 한정되며, 그밖에 타 수사기능에서 다루어진 마약류범죄 사건 또는 마약류범죄 수사업무는 제외된다.

II. 이론적 배경

1. 선행연구 개관

경찰 내 수사기능의 업무량 추정, 더 나아가 수사조직의 적정 인력규모 산출 등 수사조직의 직무 및 업무량 분석과 관련한 연구는 그간 다양한 연구대상(여러 범주와 층위에서 정의되고 규정될 수 있는 수사기능 및 조직)과 접근에 의해 진행되어 왔다.

1990년대에 이루어진 대표적 선행연구로는 한국개발연구원(KDI)이 경찰서 형사과 및 조사계 수사관을 대상으로 수행한 연구(1992)가 있다. 이 연구는 당시 경찰조직의 형사과 형사 및 조사계 조사요원을 대상으로 내·외근 수사기능의 업무량과 소요인력 등을 폭넓게 분석한 데에 큰 의의가 있었지만, 접근방법에서 극히 소수 인원에 국한된 수사관 면담 방식으로 진행함으로써 분석결과의 신뢰성에 다소 아쉬움이 남고 있다.

2010년대에 들어서 치안정책연구소에서는 일선 경찰서 수사과 조사계에서 발전한 경찰서 경제팀을 대상으로 수사 업무량 분석과 적정인력 산출을 주 내용으로 하는 경제팀 적정 업무량 연구(2012)를 진행하였다. 경제팀 연구에서는 수사관 면담 외에도 설문조사 및 통계분석에 기초한 연구접근 방식이 활용되었으며 이후 관련 연구에서도 이러한 연구방법 기조가 유지됨으로써 연구결과의 신뢰성을 제고하였다고 생각된다.

이후 2013년 성폭력 대응을 위한 전담수사팀의 정식 출범을 준비하면서 신설 성폭력 전담수사팀에 대한 업무량 분석 및 적정 업무모형 연구(2013)를 수행하고, 다음 해에는 성폭력 피해자 보호의 일환으로 지

역 의료기관에 설치된 원스톱센터 수사지원팀에 대한 연구(2014a)가 이루어졌다. 그외에도, 일선 경찰서 지능팀과 지방청 지능범죄수사대를 포괄한 보험사기 전담수사팀 연구(2014b), 보이스피싱 연구(2015) 등이 있다.

한편, 이러한 수사관 개인 또는 경찰청 단위(전체 경찰관서)의 연구 및 그 업무량 분석에서 아쉬운 점은 “팀 단위” 연구가 실질적으로 다루어지지 못하였다는 것이다. 물론 각 선행연구의 이론적 모형에서는 수사관 개인 외에도, 팀 단위 차원에서의 업무량 및 소요인력이 제시되었지만, 실제 “실증적” 분석 내용은 오로지 개인 업무량 및 그에 기초한 경찰청 차원에서의 소요정원을 산출하는 데 집중되어 있었다.

그러나 소요정원이 확보·배치된 후 현장 일선 경찰관서에서 가장 필요한 것은 팀원 개개인의 업무량보다도, 팀장을 포함한 각 팀 전체의 적정 업무량 및 팀 인력규모일 것이다.

이러한 실질적인 “팀 단위” 연구의 필요성에서 진행된 것이 경제팀의 운영성과 분석 및 수사체제 개선방안(2016)이다. 이 연구에서는 경제팀 규모가 소팀제를 지향하되, 구체적으로는 팀장 포함 5명(팀장 1명+팀원 4명)인 팀 편제를 기본 체제로 운영하면서, 팀장의 수사지휘 업무량(=팀 전체 사건처리 건수)은 연간 441.3건(정식 344.8건+반려 96.5건) 수준에서 결정되는 것이 적정한 것으로 제안되었다. 장기적으로는 여타 수사기능에서도 경제팀에서와 같이 실질적인 “팀 단위” 연구가 추가로 진행되는 것이 실무적인 팀 운영 설계 측면에서 바람직 할 것으로 생각된다.

이밖에도 최근까지 경찰서 사이버수사팀에 대한 업무량 분석(2017) 등 각 수사기능별 연구가 계속 진행됨으로서, 단순히 소요정원의 산출뿐만이 아니라 경제팀을 비롯한 각 수사기능 간 기본적인 수사 업무량(정식 및 임시 사건) 및 업무손실률 등을 상호 비교할 수 있게 되었다.

이처럼 다양한 기능(범주)와 분석 수준(단위)에서 진행되는 수사기능 직 무분석 및 업무량 연구들은 향후 경찰 각 기능별 필요 수사인력 산출과 적정 배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된다.

2. 연구 설계

1) 조사 설계

본 연구의 조사 설계는 앞선 경제팀 연구(2013), 원스톱센터 수사지 원팀(2014a) 및 보험사기 전담수사팀 연구(2014b), 사이버팀 연구 (2017) 등에서와 같이 사건의 수사 개시에서 종결까지의 현장 업무 흐름 즉 수사 프로세스 시각에 기초하였다. 그에 따라 본 연구의 마약수 사팀 수사 업무량 분석을 위한 조사는 <표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경 찰관서 마약수사팀 담당 사건에 대한 수사 프로세스를 기준으로 설계되 었다.

수사 프로세스 상에서 세부업무 범주는 지방청 및 경찰서 마약수사팀 수사관을 대상으로 한 담당 직무 면담을 통해 구축되었으며, 크게 ① 초기 수사 업무, ② 본 수사 업무, ③ 수사 마무리 업무 등 세 단계로 구분된다.

우선 ① 초기 수사 업무는 첩보의 수집, 그리고 수집된 첩보에 대한 분석 및 내사 업무를 포괄한다.

초기 수사 중에서 먼저 첩보수집 단계의 업무 내용에서는 정보원의 선정 및 관리, 마약류전과자에 대한 동향관찰, 운송·숙박·여행 등 마 약류 유관 업종 종사자를 대상으로 한 첩보활동, 인터넷을 이용한 첩보 모니터링, 첩보활동 관련 서류작업 등이 포함된다.

〈표 1〉 마약수사팀 수사 업무량에 대한 조사 설계

수사 프로세스	세부 업무범주	업무 내용	조사 목적
초기 수사	정보 수집	- 정보원 선정·관리, 전과자 동향관찰, 유관 업종 종사자 첩보, 인터넷 모니터링 - 첩보활동 관련 서류작업	업무량 (시간) 추정
	정보 내사	- 첩보 검증 : 정보원 진술 범죄전력 확인, 통신·계좌·인터넷 분석 탐문, 위장거래(샘플구매), 감시 - 첩보검증 관련 서류작업 : 정보원 진술조서 영장 신청 내사보고서 작성	"
본 수사	수사자료 요청	- 통신자료/통신사실확인자료 요청 - 금융거래정보용 영장 신청 등 서류작업	"
	인터넷· 통신수사	- 인터넷 추적수사 - SNS·통화 등 추적수사	"
	외근 추적수사	- 대상자 소재지 탐문 - 감시(잠복, 미행, 촬영, 감청, 위치추적)	"
	위장거래	- 증거 수집을 위한 위장거래(샘플구매)	"
	자료분석	- 확보된 통신, 계좌, 인터넷 수사자료 분석 - 수사보고 등 서류작업	"
	공조수사	-국제공조(외교경로, 인터폴) -국내공조(유관기관 간 공조)	"
	현장출동	- 검거 및 압수수색 : 출동 준비(장비 등) 현장 이동, 피의자 검거, 증거물 압수수색 현장 채증(소변·모발 채취, 간이시약검사) - 현장 압수수색·채증 관련 서류업무	"
	관 계 자 조 사	피 의 자	- 범행 혐의자 조사 - 공범수사, 상·하선 추적수사 - 조사준비, 서류작업(신문조서 작성·정리 등)
피 해 자		- 피해자 조사 - 조사준비, 서류작업(진술조서 작성·정리 등)	"

수사 프로세스	세부 업무범주	업무 내용	조사 목적
	참고인	- 직접 증거물 보안을 위한 조사 - 조사준비, 서류작업(진술조서 작성·정리 등)	"
	증거물 처리	- 증거물 감정요뢰 - 압수물 보관·처리 - 증거물감정·압수물처리 관련 서류업무	"
	피의자 신병처리	- 구속영장 신청 - 구속영장의 집행(또는 미집행에 따른 조치)	"
	수사 지휘	- 팀장의 서류검토, 수사방향 제시 - 외근 시 동행	"
수사 마무리	서류정리	- 수사결과보고서, 사건송치서 작성 - 송치 전 수사서류 최종 검토·정리	"
	검찰송치	- 피의자 신병호송	
업무 손실	교육 연가	- 수사 중 불가피한 직무교육, 개인연가 실시 - 정상적 업무손실 규모의 추정	적정 업무량 재산정
계			총 (시간)

첩보내사는 기 수집된 첩보에 관련된 내사활동 업무이다. 여기에는 첩보 검증 작업으로서 대상자 범죄전력 확인, 통신자료에 대한 분석, 인터넷상의 내사, 내사 착수 및 결과에 대한 서류작업이 포함된다. 첩보내사에는 더 나아가 샘플구매(위장거래) 또는 감시활동까지 포함될 수 있다.

다음으로 ② 본 수사 업무의 내용을 다시 세부적으로 보면,

- 수사자료 요청
- 인터넷·통신수사
- 외근추적수사

- 위장거래
- 자료분석
- 공조수사
- 현장출동
- 관계자조사
- 압수증거물 처리
- 피의자 신병처리
- 수사지휘 등의 내·외근 업무가 포함된다.

위 업무들을 구체적으로 보면 수사자료 요청업무는 통신자료 요청 및 통신사실확인자료 요청, 압수수색영장(금융거래정보용 포함) 신청 등 수사자료 수집 前 각종 요청서 및 영장 서류업무가 포함된다.

인터넷·통신수사는 인터넷 IP·사이트 추적, 통신(SNS·전화) 수사 등 인터넷·통신 상의 추적수사업무를 내용으로 한다.

외근추적수사는 대상자의 소재지 탐문, 감시(잠복, 미행, 사진촬영, 감청, 위치추적) 등을 통해 수행된다. 그리고 위장거래는 증거 수집을 위한 위장거래로서 샘플구매의 형태를 통해 이루어진다.

자료분석은 앞선 통신 및 금융거래자료 요청, 인터넷·통신 및 외근 추적수사 등으로부터 확보된 수사자료에 대한 분석과 수사보고 업무를 포함한다.

공조수사는 외교경로 및 인터폴을 통한 국제공조 그리고 유관기관 간 수사협력과 같은 국내공조 업무가 포함된다. 마약수사는 생산과 소비가 국제적으로 이루어지는 대표적인 국제성 범죄로서 다른 범죄와 달리 공조수사업무가 요구되는 경우가 많다. 또한 최근 들어서는 국내 유관기관 공조뿐만 아니라 경찰 내부 여타 부서(형사팀, 지구대·파출소)에서

도 마약의심자에 대한 시약검사의뢰 등 협조를 요청하는 경우가 많아 마약수사팀의 공조협력 업무가 증가하는 것으로 보인다.¹⁾

현장출동은 실제 대상자에 대한 검거 및 압수수색을 말한다. 여기에는 현장 진출 전 압수장비 등 출동준비, 사건현장 이동(왕복)과 현장에서 피의자 검거, 증거물 압수수색, 그리고 현장 채증(소변·모발 채취, 간이시약검사), 현장 압수수색·채증 관련 서류업무 등이 포함된다.

관계자조사는 피의자·피해자·참고인 등에 대한 조사업무를 말한다. 여기에는 관계자에 대한 직접적인 조사 업무 외에도 조사준비(출석요청 등) 업무, 조사과정 및 조사 후 서류작업(조서작성·정리 등) 등 일련의 업무시간을 모두 포괄한다.

특히 피의자 조사에서는 공범수사, 상·하선 추적수사가 진행되고 상선 추적의 주요 업무에는 대상자 관련 기록(수용사실 조회, 면회기록 및 출입국 기록) 확인, 압수자료(통신 및 금융거래, 우편물) 분석, 피의자 진술 확보, 계보도 작성 등이 포함된다.

압수 증거물 처리에는 압수된 증거물의 감정의뢰와 압수물 보관·처리, 압수 및 검증 관련 각종 서류(증명서, 확인서 등) 관련 업무가 포함된다.

본 수사 단계에서 피의자 신병처리에는 구속영장의 신청과 집행(영장 미집행 시에는 그에 따른 후속 조치 포함) 업무가 수반되며, 이밖에 수사지휘로서 팀장에 의한 각종 수사서류의 검토, 수사방향의 제시, 수사관 외근 시 동행 등 업무가 이루어진다.

③ 수사 마무리 업무는 수사결과보고서, 각종 조서, 사건송치서 등 사전 송치 전 수사서류의 최종 검토 및 정리 업무, 그리고 피의자에 대한 검찰송치 업무를 포함한다.

1) 단, 본 연구의 조사 설계에서 국내공조의 범위는 유관기관 간 공조에만 한정함.

한편 본 연구의 마약수사팀 수사 업무량 분석에서는 성폭력 전담수사팀 연구(2013), 월스톱센터 수사지원팀 및 보험사기 전담수사팀 연구(2014), 경제팀 개선방안 연구(2016), 사이버팀 연구(2017) 등에서와 같이 연간 근무 기간 중 불가피하게 실시된 직무교육, 개인연가 등을 조사하여 그에 따른 수사 업무의 정상적 손실 규모를 측정하도록 설계하였다.

2) 설문 진행 및 데이터

본 연구는 마약수사팀에서 처리하는 마약류범죄 수사업무에 초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설문조사는 마약수사팀이 설치되어 있는 경찰서 및 지방청에서 근무하는 마약수사팀 수사관을 대상으로 한다. 따라서 구체적인 조사대상은 경찰서 형사기능 및 지방청 광수대 등 마약류범죄와 관련될 수 있는 모든 수사관이 아니라, 경찰서 및 지방청 수사팀 중에서도 마약류범죄 수사를 위해 근무하는 마약수사팀 수사관만으로 한정된다.

전국 경찰관서에서 마약류범죄를 전담하는 수사인력은 2017년 9월 현재 218명이다. 그중 17개 지방청의 마약수사대 소속 수사관이 142명, 17개 경찰서 마약수사팀이 76명이다.²⁾

마약수사팀 근무 수사관이라는 조사대상 모집단(population) 정의를 충실히 따른다면, 그 범주는 2004년 마약수사대 창설 이후 현재까지 마

2) 마약류범죄 전담팀의 배치 관서(현원) 현황은 다음과 같다.

- ▶ 17개 지방청 마약수사대 142명 : 서울(27), 부산(13), 대구(10), 인천(10), 광주(4), 대전(6), 울산(6), 경기南(11), 경기北(6), 강원(7), 충북(5), 충남(6), 전북(6), 전남(6), 경북(6), 경남(9), 제주(4)
- ▶ 17개 경찰서 마약수사팀 76명 : 서울(34 : 남대문·용산·동대문·마포·영등포·강남·송파·노원), 부산(10 : 해운대·부산진), 경기南(19 : 용인동부·안산단원·부천원미·평택), 전남(9 : 목포·순천), 경남(4 : 진주).

약수사팀 근무 경험이 있는 전체 수사관이 될 것이다. 그러나 보직 이동 후 경찰관은 사건 처리 (소요 시간) 등에 대한 조사에서 과거 사건에 대해 기억 편견의 우려가 있고, 특히 본 연구가 역사적 추이보다는 현 마약수사팀의 직무 분석과 업무량 추정에 초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조사대상을 현재 마약수사팀에서 근무 중인 수사관으로 설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에 따라 설문조사대상은 2017년 9월 현재 전국 17개 지방청 및 17개 경찰서에 배치된 수사관으로 하고, 이들 마약수사팀 수사관 218명에 대하여 마약류범죄 처리와 업무수행 여건 등에 관한 설문을 진행하고자 하였다. 다만, 17개 지방청 마약수사대의 대장 및 관리반 요원 34명은 직접적인 수사활동에 참여하기 어려운 점을 고려하여 최종적으로 이들을 제외한 184명을 조사 대상으로 확정하였다.³⁾

앞선 <표 6>의 조사 설계를 토대로 개발·작성된 설문과 위 조사 설계(현직 현장 수사관 조사)에 따라 진행되는 본 연구의 설문조사는 팀장을 포함한 전국 경찰관서 마약수사팀원을 대상으로 분청 마약계의 협조를 통해 약 4주간(2017. 9. 8. ~ 9. 29)에 걸쳐 실시되었다.

또한 본 설문조사는 마약류범죄 담당 수사관이 스스로 설문지를 완성하는 자기 기입식 설문이나, 여러 담당 사건 중에서도 가장 최근(1년)에 수사 송치한 사건 1건에 대해서만 응답토록 제한함으로써 마약사건 처리 실태에 대한 시의성을 높이는 한편 수사종결시간이 오래 경과한 사건에 대한 기억편견의 위험을 낮추도록 하였다. 아울러 마약류범죄의

3) 선행연구인 성폭력 전담팀 연구(2013)의 조사 사례에서도, 당시 조사대상이 관악경찰서의 시범전담팀(팀 책임자를 제외한 조사관) 4명, 형사팀(형사과 형사당직 및 강력 1팀-6팀 수사관) 약 80명 등 해당부서 현직 인원으로 한정하여 진행하였다. 또한 윈스톱 수사지원팀 연구(2014)에서도 전국 25개 윈스톱 센터에 배치된 현직 여성 경찰관 100명에 한정하여 조사가 이루어졌다.

통계가 그 범죄 특성상 사건 단위가 아닌 검거사범(인원) 단위로 생산되고 있어, 설문 구조는 사건 처리에 대한 프로세스 시각을 유지하되 각 세부 업무량에 대한 질문은 마약 대상자 처리 인원(1명)을 기준으로 답하도록 설계하였다.

전국 범위의 설문조사는 그 진행 과정에서 최근 중대 마약사건 수사 등으로 인해 응답 지연이 우려되었으나, 마약사건 수사업무가 팀 단위로 함께 이루어지고 무엇보다 모집단이 상대적으로 매우 적었던 특성에 따라 기한 내에 조사 대상자 184명에 대한 설문이 모두 완료될 수 있었다. 다만 회수된 총 184부의 설문지 중 응답자 착오로 인해 부적합한 설문지가 포함된 경우가 있어(1부), 최종적으로 183건을 본 연구의 분석에 이용하였다.

한편 설문조사에 의한 데이터 외에, 최근 마약류 사건 및 마약수사팀 관련 통계 분석 등에 필요한 자료는 경찰청 수사국 마약계 및 각 경찰관서에서 별도로 제공한 2014-2017년간의 수사활동 및 사건처리 데이터를 이용하였다.

Ⅲ. 마약류범죄 추세와 대응 실태

마약류범죄와 관련한 마약류사범의 총 검거 인원(경찰 및 타 기관 검거 인원 포함)은 <표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12년 9,255명에서 2013년 9,764명, 2014년에 9,984명으로 점증하여 오다가, 2015년 들어 11,916명으로 급증하고(전년 대비 19.4% 증가), 지난 2016년에도 다시 14,214명으로 늘어나(전년 대비 19.3% 증가), 그 규모가 최근 들어 연평균 약 20% 가까이 급증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표 2> 마약류사범 검거 추이(2012~20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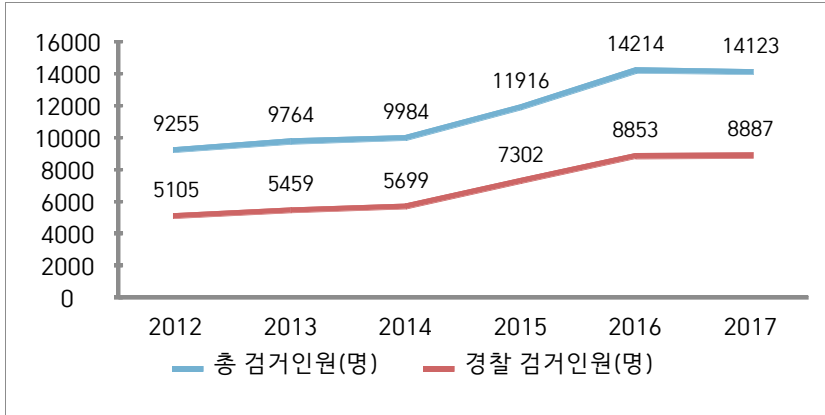
	총 검거(명)	경찰 검거(명)	경찰의 검거 비율(%)
2012	9,255	5,105	55.2
2013	9,764	5,459	55.9
2014	9,984	5,699	57.1
2015	11,916	7,302	61.3
2016	14,214	8,853	62.3
2017	14,123	8,887	62.9

주 : 총 검거 인원은 경찰 외, 검찰, 해경, 관세청 등의 검거 인원을 포함.
 자료 : 경찰청 수사국, "마약류사범 단속 현황", 2018. 2.

한편 마약류사범의 검거과정에서 경찰이 검거한 인원은 <그림 1>에서 보듯이 2012년도의 경우 총 9,255명 가운데 5,105명을 검거함으로써 전체 마약류사범의 절반 이상인 55.0%를 검거하는 실적을 올린바 있다. 이후 2013년에도 5,459명을 검거하여 경찰 검거 비율이 56.2%로 증가하고, 계속해서 2014년 5,699명(경찰 검거 비율 56.0%), 2015년 7,302명(61.5%), 2016년 8,853명(62.3%), 2017년 8,887명(65.4%)을 검거하는 등 검거인원과 동시에 그 검거비율 또한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양상을 보임으로써 경찰의 마약류범죄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과 역할이 커진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특히 경찰은 국내 마약류사범이 2015년에 이미 1만 명을 초과하는 등 마약 청정국의 지위를 위협받는 상황에서도 지난 2016년에 연말연시 마약류사범 특별단속(3개월), 마약류 투약자 특별자수기간 운영(3개월), 양귀비·대마 특별단속(4개월), 인터넷·SNS 이용 마약류사범집중 단속(6개월) 등을 통해 마약류사범 8,349명을 검거함으로써, 전년 7,302명 대비 20.7% 증가하는 성과를 거두었다.⁴⁾

〈그림 1〉 마약류사범 검거 추이(2012~2017)



자료 : 경찰청 수사국, “마약류사범 단속 현황”, 2018. 2.

지난 2016년 마약류범죄에서 마약류별 검거유형을 보면 검거 인원 중 향정신성의약품사범이 74.6%(6,608명)으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마약사범 15.0%(1,332명), 대마사범이 10.3%(913명)로 나타났다.⁵⁾ 세부적으로

4) 2016년 마약류사범 집중단속의 주요 성과는 다음과 같다(경찰청 수사국, “마약류범죄 통계”, 2017. 4).

- ▶ 연말연시 마약류사범 특별단속 : 2015. 11. 6 ~ 2016. 2. 15. (3개월)
→ 1,512명 검거하여 전년 동기 1,049명 대비 44.1% 검거 인원 증가.
- ▶ 마약류투약자 특별자수기간 : 2016. 4~6월 (3개월)
→ 114명 자수하여 전년 동기 77명 대비 48.1% 자수자 증가.
- ▶ 양귀비·대마 특별단속 : 2016. 4~7월 (4개월)
→ 1,385명 검거하여 전년 동기 1,154명 대비 20.2% 검거 인원 증가
- ▶ 인터넷·SNS 이용 마약류 유통사범 등 집중단속 : 2016. 5~10월 (6개월)
→ 4,480명 검거하여 전년 동기 3,851명 대비 16.3% 검거 인원 증가.

5)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의 법률적 정의에 따를 경우, 마약류의 종류는 크게 ① 마약, ② 향정신성의약품, ③ 대마 등 세 범주로 분류된다. 보다 구체적으로 각 분류범주 내에는 다음과 같은 약물들이 포함된다(경찰청, 마약류범죄수사의 이해, 2015. 11, 69쪽).

① 마약 :

보면 향정신성의약품사범 중에서는 필로폰사범이 가장 많았으며, 마약사범 경우는 대부분이 양귀비 밀경작사범이었다. 이는 지난 2016년 5월~10월 간 인터넷·SNS 이용 마약류사범 집중단속 결과 검거된 향정사범 2,962명 중 필로폰사범이 80%(2,370명), 마약사범 1,064명 중 양귀비사범이 96.9%(1,031명)를 차지했던 것에서도 잘 나타난다.

한편 2016년 마약류범죄에서 국적별 검거유형을 보면 <표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외국인을 711명 검거하여 전년 408명 대비 74.3% 증가한 실적을 보였다. 외국인 마약류사범은 2012년 235명, 2013년 224명, 2014년 349명, 2015년 408명, 2016년 711명이 검거되어 전반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이다.

<표 3> 경찰의 외국인 마약류사범 검거 추이(2012~2017.8)

단위 : 명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 8월
총 인원	235	224	349	408	711(100)	425(100)
중국	44	67	130	187	362(50.9)	198(46.6)
태국	15	9	75	95	218(30.7)	147(34.6)
미국	84	70	57	35	33(4.6)	19(4.5)
기타	92	78	87	91	98(13.8)	61(14.4)

주 : ()는 전체 검거 인원에서 차지하는 비율
 자료 : 경찰청 수사국, "마약류범죄 통계", 2017. 4.

- 양귀비(아편), 모르핀, 헤로인, 테바인, 코데인, 헤로인, 코카인 등 천연 마약.
- 페치딘, 메사돈 등 합성마약.
- ② 향정신성의약품 :
 - LSD, JW-018 등 환각제.
 - 메스암페타민(Methamphetamine, 필로폰), 야바(YABA), MDMA(Methylenedioxymethamphetamine, 엑스터시) 등 각성제.
 - 졸피뎀·프로포폴 등 신경안정제.
- ③ 대마 : 대마초(마리화나), 대마수지((hashish), 해쉬쉬 오일(hashish oi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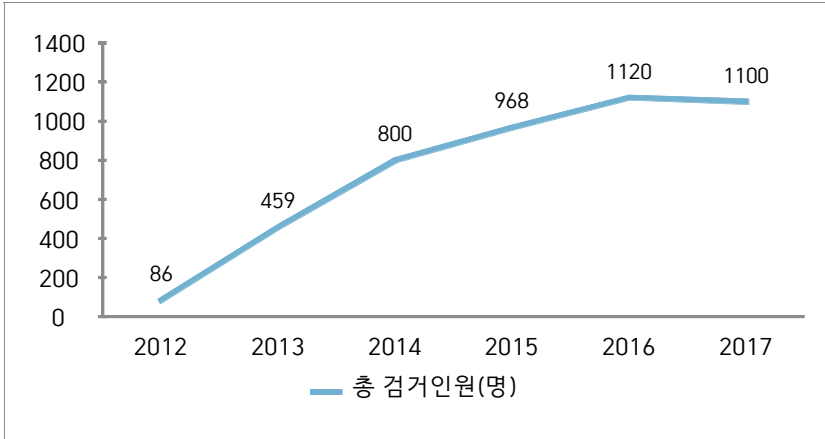
외국인사범 중에는 특히 중국인이 50.9%(362명)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태국인 30.7%(218명), 그 외 미국인 4.6%(33명) 순이었다(2016년 기준). 중국 및 태국인 마약류사범들은 중국동포 근로자와 태국인 근로자가 대부분을 차한 가운데 이들의 비중이 계속 증가하고 있으나, 과거 가장 비중이 높았던 미국인은 점차 감소하는 추세를 보여주고 있다.

외국인들과 관련된 마약류를 보면 중국인의 경우 필로폰, 태국인은 야바(YABA)⁶⁾가 주종을 이루고, 미국인 관련 사건에서는 대마가 주로 유통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마약류범죄 유형 가운데서, 인터넷·SNS 등을 통한 마약류사범(인터넷 마약류사범)은 <그림 2>에서 보듯이 2012년 86명 수준에 불과하였으나 2013년 459명, 2014년 800명, 2015년 968명으로 급증하고 2016년에는 천명 단위를 넘어선 1,120명이 검거되어 외국인 마약류사범의 경우와 같이 전반적으로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6) 야바는 미얀마의 세계적 헤로인밀매업자였던 '쿤사(Khun Sa)'의 마약조직이 개발한 것으로, 메스암페타민에 카페인과 기타 성분(코데인 등)을 혼합하여 복용하기 쉽도록 분말이 아닌 정제나 캡슐 형태로 만들었으며, 복용 시 최대 3일간 잠을 자지 않을 정도로 각성 및 환각효과가 강하다. 경찰청, 마약류범죄 수사의 이해, 2015. 11, 120쪽.

〈그림 2〉 경찰의 인터넷·SNS 마약류사범 검거 추이(2012~2017)



자료 : 경찰청 수사국, “마약류사범 단속 현황”, 2018. 2.

지난 2017년에도 전년 수준인 1,100명이 검거됨으로써 인터넷 마약류사범은 향후에도 그 증가 추세가 쉽게 꺾이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종래 인터넷 유통 마약류는 대부분 수면제·다이어트제·GHB 등에 국한되었으나, 최근에는 필로폰·대마 등 주요 마약류까지도 인터넷·SNS 등을 통해서 유통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어 인터넷 마약류사범의 확산에 좀 더 주목해야 할 필요가 있다.

최근 이러한 마약류범죄의 증가 추세 속에, 향후에도 국제적 교류의 증가 및 인터넷·SNS 등 통신망의 발달로 마약류 유통이 기존 중독자에서 일반인으로 확산될 위험성이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그에 따라 경찰청에서는 2017년 들어서도 증가 추세에 있는 인터넷·SNS 이용 유통사범 및 외국인사범 단속 강화,⁷⁾ 양귀비·대마 밀경사

7) 인터넷·SNS 이용 사범 집중단속으로 일반계층으로 마약류 확산을 차단하고, 외국인 밀집 지역 내 유통사범 집중단속으로 해외 마약류의 국내 유통 차단을

범 및 의료용 마약류 불법취급 병의원 단속,⁸⁾ 관세청·해외단속기관과 마약류 국제유통 차단을 위한 공조강화⁹⁾ 등을 통해 마약류 밀반입·판매 사범 등 마약류사범에 대한 선제적인 차단과 대응활동을 전개한바 있다.

IV. 업무량 분석 결과

1. 응답 수사관 및 사건에 대한 기초통계

마약수사팀 수사관의 직무수행에 따른 업무량을 파악하기 위해 앞서 설문에 참여한 전국 17개 지방청 소속 마약수사대 및 17개 경찰서 마약수사팀 수사관에 대하여 소속 지방청, 관서 유형, 연령, 계급, 경찰관으로서의 총 재직연수, 마약수사팀 근무경력 등을 살펴보았다.

먼저 응답 수사관(183명)들의 소속 지방청을 보면 <표 4>에서 보듯이 서울 57명(31.3%), 경기남부 27명(14.8%), 부산 20명(10.9%), 전남 13명(7.1%), 경남 11명(6.0%)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대도시 인구밀집 지역인 서울·부산 및 경기남부 등 3개 지역관서의 경우 전체 응답수사관 중 57.0%로 과반이 넘는 비중을 차지하였다. 이는 앞서 밝혔듯이 이들 지방청 마약수사대에 타 지역에 비해 많은 수사 인원이 배치되고 또한 지역 내에 경찰서 단위에도 마약수사팀

도모.

- 8) 개화기~수확기에 맞춰 아편 등 원료인 양귀비와 대마 밀경사범 집중단속을 실시하고, 수면제 등 의료용 마약류 불법유통 의심 병의원에 대해서는 식약처와 합동점검(상·하반기 각 1회)을 실시.
- 9) 관세청과 공동으로 유관기관 초청 공조회의 개최, 수사국장 주재 해외 마약류 단속기관 초청 국제공조회의 개최.

이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이다. 전남과 경남의 경우에도 관내에 각각 마약수사팀 운영 경찰서를 포함하고 있어(전남 : 목포·순천, 경남 : 진주), 지방청 수사대만 운영되는 타 지역과 달리 다소 큰 비중으로 나타나고 있다.

응답 수사관들의 소속 관서를 지역별이 아닌 관서 유형별(지방청, 경찰서)로 살펴보면, 지방청 수사대 소속이 108명(59.0%), 경찰서 마약수사팀 소속이 75명(41.0%)으로 두 관서 간 비율이 약 6 : 4 정도로 나타났다. 이는 마약수사관 실제 현원(지방청 142명, 경찰서 76명) 비율 약 2 : 1에 비해 두 관서 간 차이가 그다지 크지 않게 조사되었는데, 이는 설문과정에서 지방청 수사대 소속 수사대장 및 관리반 요원을 제외하였기 때문에 나타난 자연스런 결과이다.

수사관들의 연령대는 20대 9명(4.9%), 30대 80명(43.7%), 40대 66명(36.1%), 50대 28명(15.3%)으로 30대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표 4〉 응답 수사관의 인구사회학적 특징(2017년 9월 현재)

변수		빈도 (N=183)	%
소속 지방청	서울	57	31.1
	부산	20	10.9
	대구	8	4.4
	인천	8	4.4
	광주	4	2.2
	대전	4	2.2
	울산	4	2.2
	경기북부	4	2.2
	경기남부	27	14.8
	강원	6	3.3
	충북	3	1.6

변수		빈도 (N=183)	%
	충남	4	2.2
	전북	3	1.6
	전남	13	7.1
	경북	4	2.2
	경남	11	6.0
	제주	3	1.6
관서유형	지방청 미수대	108	59.0
	경찰서 미수팀	75	41.0
연령	20대	9	4.9
	30대	80	43.7
	40대	66	36.1
	50대	28	15.3
계급	순경	11	6.0
	경장	42	23.0
	경사	64	35.0
	경위	57	31.1
	경감	9	4.9
재직연수	5년미만	24	13.1
	5년이상~10년미만	51	27.9
	10년이상~15년미만	33	18.0
	15년이상	75	41.0
부서경력	1년미만	61	33.3
	1년이상~2년미만	36	19.7
	2년이상~3년미만	27	14.8
	3년이상	59	32.2

수사관들의 계급은 순경이 가장 적은 11명(6.0%)인 반면, 경사가 가장 많은 64명(35.0%)이었으며, 그 다음으로 경위 57명(31.1%), 경장 42명(23.0%)으로 나타났다. 수사팀원 구성에서 경사와 경위 계급이 전체

의 약 2/3을 차지하여(66.1%) 이들 두 계급이 마약수사팀의 주축을 이루고 있다. 특히 본 연구는 각 지방청 수사대 및 경찰서 수사팀에 대해 경위급 팀장을 포함한 팀 전체 전수 조사를 지향하였기 때문에 경위급 수사관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¹⁰⁾

경찰관으로서의 재직연수를 보면 우선 15년 이상이 가장 많은 75명(41.0%)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5년 이상~10년 미만이 51명(27.9%), 10년 이상~15년 미만이 33명(18.0%)을 차지했으며, 5년 미만 재직자는 24명(13.1%)으로 나타나, 마약수사팀의 경우 15년 이상 재직자를 중심으로 10년 이상 재직자들이 전체의 약 60%에 달하였다.

그 중에서 마약수사팀 근무경력을 보면, 1년 미만이 61명(33.3%), 1년 이상~2년 미만이 36명(19.7%), 2년 이상~3년 미만이 27명(14.8%), 3년 이상이 가장 많은 59명(32.2%)으로서 나타났다. 1년 미만이 전체의 1/3으로 가장 많은 비중(33.3%)을 차지했으며, 3년 이상 마약수사 경력을 가진 수사관도 거의 비슷한 약 1/3의 비중(32.2%)을 차지하고 있다. 마약수사의 전문성을 고려할 때 마약수사팀 경력기간은 전체적으로 그다지 길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마약수사에서 요구되는 업무강도에 비하여 그간 수사성과에 대한 인센티브의 부족, 팀 수사조직의 불안정성 특히 경찰서 단위에서의 마약수사팀의 불안정성 등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응답 수사관들이 처리한 사건들의 마약류 유형¹¹⁾을 보면 <표 5>에서 보듯이 향정신성의약품이 가장 많은 85.8%이고, 다음으로 대마 10.9%,

10) 마약수사팀의 경우 팀장은 지방청 수사대장 또는 관리반 요원과 달리 수사업무에 직접 참여하기 때문에 조사대상에 포함되었다. 이런 점에서 본 연구는 팀장이 수사 외에 많은 팀 관리 업무를 하고 있다는 이유로 팀장을 조사대상에서 제외한 선행연구(예컨대 2017년 경찰서 사이버수사팀 업무량 분석)와는 다르다.

11) 본 연구의 설문지에서 예시한 마약류범죄 사건유형 :

마약 2.7%로서 향정신성의약품이 마약류 사건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세부 유형에서도 특정 마약류에 집중되는 경향을 보여, 향정사건의 경우 필로폰과 같은 각성제 사건이 전체 마약류 사건의 82.0%를 차지하고 있으며, 대마사건은 대마초, 마약사건은 양귀비와 같은 천연마약에 집중되고 있다. 특히 대마초사건과 마약사건 등의 경우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이 함께 연루되어 있는 경우 많아 향정사건이 사실상 마약류 사건의 주종을 이루고 있다.

응답 수사관들이 처리한 사건들의 수사 단서를 보면 탐문·첩보에 의한 것이 가장 많은 123건(67.5%)이고, 다음으로 수사 중 인지가 48건(26.2%), 진정·투서 3건(1.6%) 등으로 나타났다. 이밖에도 계좌추적, 현행범 체포, 공범자 자수, 신고에 의한 사건 등 기타 8건(4.4%) 등이 있다.

마약류 사건의 수사 단서를 보면 대부분 탐문·첩보, 수사 중 인지 등에 의한 인지사건이다. 다만, 2017. 6. 3일부터 마약류관리법 개정으로 인터넷·신문·잡지 등을 이용한 마약류 매매·사용 광고행위에 대한 처벌¹²⁾이 가능하게 됨에 따라 일선 관서에서는 마약류 광고행위에 대한 신고 접수사건이 다량으로 발생될 가능성이 높다.

사건 유형	마약류 유형	마약류 세부 유형	비고
1	마약	양귀비, 아편, 코카인	천연마약(자연상태)
		알카로이드	모르핀·테바인·코데인, 코카인 등
		반합성 마약	헤로인 등
		합성 마약	페치딘, 메사돈 등
2	향정신성의약품	환각제	LSD, 합성대마 등
		각성제	필로폰, 엑스타시, 아바
		신경안정제	프로포폴, 졸피뎀
3	대마	대마초	마리화나
		대마수지, 대마제품	해쉬쉬, 대마유 등

- 12) 마약류관리법[시행 2017.6.3.] [법률 제14353호, 2016.12.2., 일부개정] 제3조 제12호 및 제62조 제1항 제3호 신설규정에 따라, 마약류 관련 금지행위(제조·매매·투약 등)에 관한 정보를 광고하는 행위는 3년이하 징역, 3천만원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표 5〉 마약류 사건의 기초통계

변수		빈도 (N=183)	%
마약류 유형	마약	5	2.7
	향정	157	85.8
	대마	20	10.9
	결측	1	.5
마약류 세부 유형	천연마약	5	2.7
	환각제(향정)	6	3.3
	각성제(향정)	150	82.0
	안정제(향정)	1	.5
	대마초	20	10.9
	결측	1	.5
단서	탐문·첩보	123	67.2
	수사중 인지	48	26.2
	진정·투서	3	1.6
	기타	8	4.4
	결측	1	.5
수사관수(명)	1	1	.5
	2	14	7.7
	3	16	8.7
	4	73	39.9
	5	58	31.7
	6	18	9.8
	8	2	1.1
	결측	1	.5
수사기간	1개월이내	38	20.8
	2개월이내	48	26.2
	3개월이내	53	29.0
	3개월초과 ~ 6개월이내	33	18.0
	6개월초과	10	5.5
	결측	1	.5

사건 수사에 투입된 수사관 수에서는, 경제팀 및 사이버팀의 경우, 1인에 단독 배당된 경우가 가장 많으나(사이버팀의 경우 1인 수사관 사건 64.7%), 마약수사팀의 경우에는 첩보수집, 현장출동, 대상자검거 등 복수의 수사관들의 협력을 요하는 난이도 높은 사건 특성이 반영되어 4명 이상 사건이 가장 많은 39.9%, 5명인 사건이 31.7%를 차지하고 있다. 수사관 4~5명인 사건이 대다수인 점은 현재 마약수사팀의 팀당 인력과 편제로 볼 때 사건 발생 시 팀장 포함 마약수사팀 전원이 참여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사건처리에 소요된 수사기간은 1개월 이내에 종결한 것이 38건(20.8%), 2개월 이내 종결한 경우 48건(26.2%), 3개월 이내가 가장 많은 53건(29.0%)으로 나타나, 사건 처리 기한의 제도적 제약에 따라 대체로 3개월 이내에서 종결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3개월 초과 ~ 6개월 이내 처리된 경우가 33건(18.0%), 6개월 초과 처리사건도 10건(5.5%)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다.

2. 마약류 사건 수사 업무량 분석

설문결과를 토대로 마약류 사건 수사 업무량(건당 평균 소요시간)에 대한 분석결과를 업무 프로세스에 따라 개관해 보면, 아래의 <표 6>에서 보는 바와 같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다른 사건들과 달리 마약류범죄의 경우 그 주요 통계 기준이 사건 “건수”가 아닌 검거 “인원” 위주로 생산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처럼 건수 기준에 입각하여 마약류 사건 수사 업무량을 파악하기에는 난점이 있기 때문에, 그 업무량에 대한 분석은 통계활용이 가능한 마약 대상자 개인별(인원별)로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러한 통계자료상의 제약을 고려하여 본 연구는 마약류 사건 업무량 조사에서 피의자 1명인 사건을 기준으로 조사하였으며, 불가피하게 복수의 마약류사범이 포괄된 사건의 경우에도 사건에 연루된 피의자 전체가 아닌 특정 피의자 1명을 기준으로 응답하도록 조사하였다.

그에 따라서 본 연구의 업무량 조사결과 및 분석에서 말하는 마약류 사건 1건의 의미는 피의자 1인을 의미하며, 검거 통계에서 검거 인원은 곧 검거사건 수와 동일하게 의제되어 분석에 활용할 수 있게 된다.

〈표 6〉 마약류 사건 세부업무별 소요시간 기술통계량(피의자 1인 기준)

단위 : 시간(h)

	N	최소값	최대값	M	SD
정보수집—정보원	166	.0	38.0	8.892	7.495
정보수집—외근	161	.0	28.0	7.366	7.087
정보수집—내근	161	.0	36.0	5.640	6.775
정보수집—서류	164	.0	4.0	2.396	1.328
정보내사—정보원진술	172	.0	16.0	6.436	5.225
정보내사—외근	160	.0	36.0	8.537	7.218
정보내사—내근	160	.0	32.0	7.738	6.712
정보내사—서류	159	.0	6.0	2.610	1.326
통신자료요청	168	.0	4.0	1.399	1.001
통신사실확인자료요청	163	.0	4.0	1.816	1.094
영장신청	163	.0	4.0	2.046	1.298
인터넷·통신수사	168	.0	56.0	13.780	12.160
탐문감시	153	.0	64.0	15.641	14.039
위장거래	167	.0	16.0	4.719	6.291
자료분석	167	.0	24.0	9.778	6.194

	N	최소값	최대값	M	SD
분석결과—서류	170	.0	18.0	8.435	4.925
국제공조	168	.0	18.0	2.071	4.928
국내공조	167	.0	16.0	2.778	5.001
현장출동준비	169	.0	8.0	1.923	1.530
현장이동검거	178	.0	16.0	8.483	4.342
현장증거물확보	178	.0	8.0	2.135	1.416
현장증거물—서류	177	.0	8.0	2.356	1.395
피의자조사	181	.0	24.0	6.680	4.196
공범·상하선조사	179	.0	24.0	7.316	4.907
참고인조사	178	.0	18.0	3.596	3.596
피해자조사	167	.0	12.0	0.865	2.351
감정의뢰(서류업무포함)	133	.0	8.0	4.598	2.139
압수물보관폐기(서류업무포함)	139	.0	8.0	4.072	2.296
유치장입출감	178	.0	16.0	4.315	4.010
구속영장신청	164	.0	8.0	2.744	1.627
구속영장집행	179	.0	16.0	3.436	3.157
수사지휘	162	.0	16.0	5.747	4.694
송치서류정리	176	1.0	16.0	7.420	4.077
피의자검찰송치	167	.0	16.0	3.605	2.824
합계				181.369	

구체적으로 분석결과를 보면 우선 초기수사 단계에서는 정보원으로부터 첩보수집활동에 8.892시간, 외근에 의한 첩보수집에 7.366시간, 내근 첩보수집 5.640시간, 첩보수집관련 서류작업에 2.396시간이 소요된 것으로 추정되었다.

초기수사 중 첩보내사 단계에서는 정보원으로부터 진술 등 첩보내사 활동에 6.436시간, 외근 첩보내사 8.537시간, 내근에 의한 첩보내사에 7.738시간, 첩보수집관련 서류작업에 2.610시간이 소요된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본 수사 단계에서는 우선 검거 전 수사자료 수집을 위한 서류작업으로서 통신자료요청 1.399시간, 통신사실확인자료요청 1.816시간, 영장신청에 2.046시간이 소요되었으며, 검거를 위한 추적수사활동에서는 인터넷·통신수사 13.780시간, 탐문·감시 15.641시간, 위장거래활동에 4.719시간이 걸린 것으로 추정되었다. 검거 전 확보된 수사자료의 분석에서는 9.778시간이 소요되고 분석결과에 대한 보고서 작성 등 관련 서류작업에도 8.435시간이 소요되었다. 공조수사에 대해서는 국제공조의 경우 2.071시간, 국내공조의 경우 2.778시간이 소요된 것으로 나타났다.

본격적인 대상자 검거 단계에서 우선 현장출동준비에 1.923시간, 현장이동 및 검거에 8.483시간, 사건현장에서의 증거물확보에 2.135시간, 현장 증거물 수색·채증 등 관련 서류작업에 2.356시간이 소요된 것으로 추정되었다.

검거 후 관계자 조사 단계에서는 피의자조사에 6.680시간, 공범 및 상하선 등 조사에 7.316시간, 참고인조사에 3.596시간, 피해자조사의 경우는 거의 없으나 약 0.865시간으로 나타났다. 검거 후 압수된 증거물 등의 처리 업무로서 우선 생체시료 및 압수물의 감정의뢰(감정의뢰서 및 회신결과보고 등 서류업무 시간 포함)에 4.598시간, 압수물의 보관·폐기(압수물 보관·폐기 관련 등 서류업무 시간 포함)에 4.072시간이 소요되었다.

피의자의 신병 처리와 관련된 업무로서 구속 전 유치장 입·출감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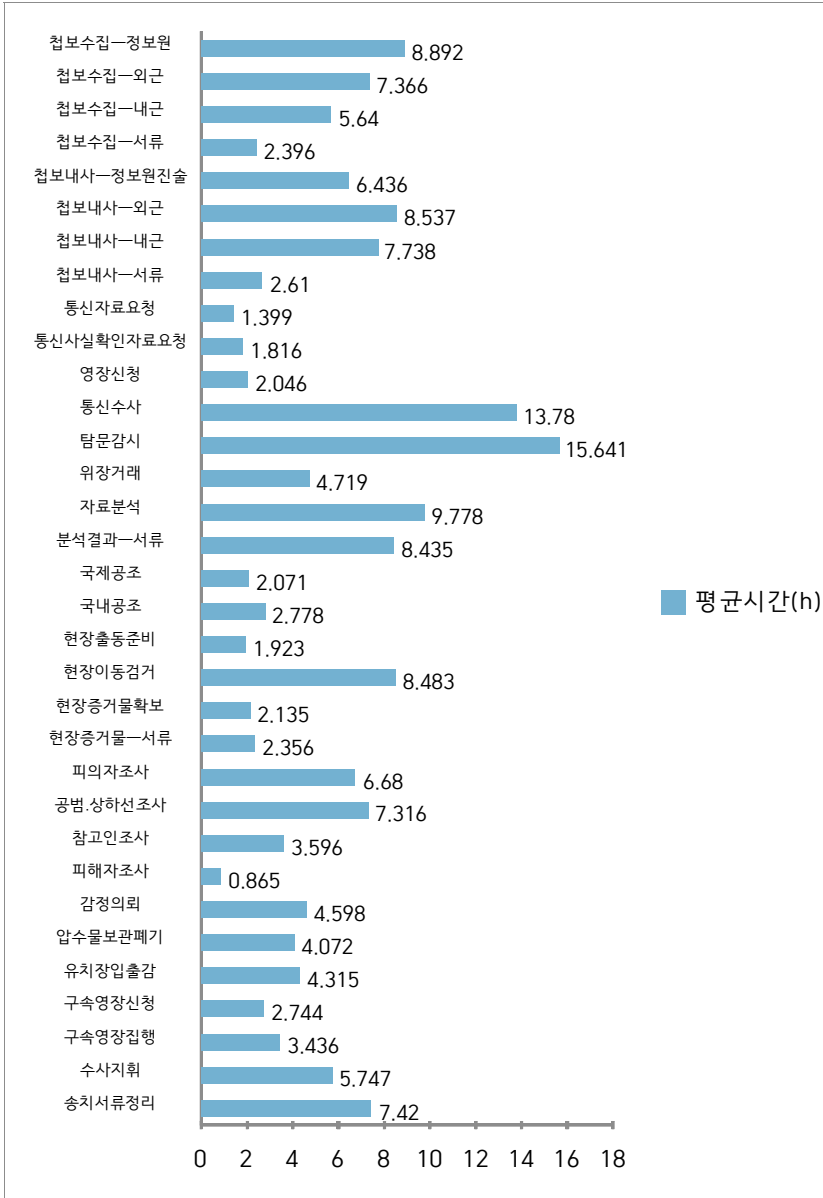
4.315시간, 구속영장신청에 2.744시간, 구속영장집행(미집행 시 조치, 집행정지·취소, 석방 등 관련 업무 포함)에 3.436시간이 걸린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해당 사건에서 팀장의 서류검토, 수사방향 제시, 외근 시 동행 등 수사지휘 시간은 5.747시간으로 나타났다.

마지막 수사 마무리 단계에서 최종 수사서류의 작성·검토 등 송치서류의 정리에 7.420시간, 피의자의 검찰송치(신병호송)에 3.605시간이 소요된 것으로 추정되었다.

이상에서 살펴본 세부업무별 소요시간 추정을 통해 마약류 사건 1건 당 소요되는 총 시간을 보면 평균 181.369시간(피의자 1인 기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마약수사 업무 가운데서도 각 세부업무별로 보았을 때 가장 많은 시간이 소요된 것은 <그림 3>에서 보듯이 검거를 위한 추적수사활동 단계에서 특히 외근에 의한 탐문·감시(15.641시간) 활동과 인터넷·통신수사(13.780시간)였다. 그 다음으로는 검거 전 수사자료의 분석(9.778시간), 정보원으로부터 첩보수집(8.892시간), 외근에 의한 첩보내사(8.537시간), 현장이동 및 검거(8.483시간)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그림 3〉 마약류 사건 세부업무별 소요시간 기술통계량(피의자 1인 기준)



마약류 사건 1건당 소요되는 업무량을 관서별(지방청 수사대, 경찰서 마약팀)로 보면, <표 7>에서 보는 바와 같이 지방청 수사대의 경우 평균 182.805시간, 경찰서 마약팀의 경우 179.298시간으로 지방청 수사대가 약간 큰 것으로 나타났으나, 실질적으로 두 집단 간에는 그 차이가 거의 없었다. 이는 관서 유형에 관계없이 마약수사가 대체로 인지수사에 기초한 팀 단위 수사를 통해 이루지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표 7> 관서별 마약류 사건처리 소요시간 기술통계량(피의자 1인 기준)

단위 : 시간(h)

관서	평균	N	표준편차
지방청 수사대	182.805	108	72.439
경찰서 마약팀	179.298	75	68.528
합계	181.368	183	70.692

주 : 1) 관서별 각 케이스에서 항목별 결측치는 세부업무 항목의 평균값으로 대체함.

t-검증에서도 두 집단의 평균 사건처리 소요시간에는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8>을 통해 보듯이 우선 Levene의 등분산 검정 결과, 등분산의 가정에 문제가 없었다. 즉 유의확률 p-value가 .330로서 두 집단의 분산이 같다는 귀무가설은 채택되었다. 등분산 가정 하의 t-value가 .329, p-value가 .742로 나타나 집단 간 평균, 즉 관서별 평균(소요시간) 차이가 유의미하다는 가설은 채택될 수 없다.

이러한 검증 결과는, 마약류 사건 수사업무가 관서별로 상이한 평균 소요시간을 갖지만 집단 간 유의미한 차이를 찾을 수 없기 때문에, 관서에 관계없이 전체 마약수사팀을 대상으로 한 소요시간 평균치를 그대로 사용하여도 무리가 없다는 것을 시사한다.

〈표 8〉 관서별 마약류 사건처리 소요시간에 대한 t-검정

	Levene의 등분산 검정		평균의 동일성에 대한 t-검정						
	F	유의 확률	t	자유도	유의 확률 (양쪽)	평균차	차이의 표준오차	차이의 95% 신뢰구간	
								하한	상한
등분산 가정	.955	.330	.329	181	.742	3,50730	10,65175	-17,51028	24,52489
등분산 가정 없음			.333	164,781	.740	3,50730	10,54522	-17,31385	24,32846

마약류 사건을 유형별로 보면, 향정신성의약품 사건이 가장 큰 183.429시간이 소요되고, 다음으로 대마 180.602시간, 마약 121.776시간의 순으로 나타났다(〈표 9〉). 필로폰 등 향정사건은 대마사건과 함께 전체 소요시간 평균과 거의 차이가 없었으나, 양귀비와 같은 마약사건은 다른 사건 유형과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표 9〉 마약류 사건의 유형별 평균 사건처리 소요시간

단위 : 시간(h)

마약 유형	평균	N	표준편차
마약	121.776	5	112,756
향정	183.429	157	71,0741
대마	180.602	20	52,360
합계	181.424	182	70,883

주 : 1) 유형별 각 케이스에서 항목별 결측치는 세부업무 항목의 평균값으로 대체함.

V. 결론

본 연구는 최근 증가하는 마약류범죄의 효과적인 대응을 위해 경찰의 마약전담 적정 수사인력 연구 필요성을 제기하면서, 마약수사팀의 수사 소요인력 산출을 위한 기초 연구로서 마약류사건 처리에 소요되는 수사 업무량을 추정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전국 마약수사팀 수사관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응답 수사관 183명의 설문결과를 토대로 마약류 사건 수사 업무량(건당 평균 소요시간)에 대한 분석을 진행하였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다른 사건들과 달리 마약류범죄의 경우 그 주요 통계 기준이 사건 “건수”가 아닌 검거 “인원” 위주로 생산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통계자료상의 제약을 고려하여 본 연구는 마약류 사건 업무량 조사에서 피의자 1명인 사건을 기준으로 조사를 실시하였다. 그에 따라서 본 연구의 업무량 조사결과와 분석에서 말하는 마약류 사건 1건의 의미는 피의자 1인을 의미하며, 검거 통계에서 검거 인원은 곧 검거사건 수와 동일하게 의제되어 분석에 활용할 수 있게 된다.

분석결과를 구체적으로 보면 우선 초기수사 단계에서는 정보원으로부터 첩보수집활동에 8.892시간, 외근에 의한 첩보수집에 7.366시간, 내근 첩보수집 5.640시간, 첩보수집관련 서류작업에 2.396시간이 소요된 것으로 추정되었다.

초기수사 중 첩보내사 단계에서는 정보원으로부터 진술 등 첩보내사활동에 6.436시간, 외근 첩보내사 8.537시간, 내근에 의한 첩보내사에 7.738시간, 첩보수집관련 서류작업에 2.610시간이 소요된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본 수사 단계에서는 우선 검거 전 수사자료 수집을 위한 서류작업으로서 통신자료요청 1.399시간, 통신사실확인자료요청 1.816시간, 영장신청에 2.046시간이 소요되었으며, 검거를 위한 추적수사활동에서는 통신수사 13.780시간, 탐문·감시 15.641시간, 위장거래활동에 4.719시간이 걸린 것으로 추정되었다.

검거 전 확보된 수사자료의 분석에서는 9.778시간이 소요되고 분석결과에 대한 보고서 작성 등 관련 서류작업에도 8.435시간이 소요되었다. 공조수사에 대해서는 국제공조의 경우 2.071시간, 국내공조의 경우 2.778시간이 소요된 것으로 나타났다.

본격적인 대상자 검거 단계에서 우선 현장출동준비에 1.923시간, 현장이동 및 검거에 8.483시간, 사건현장에서의 증거물확보에 2.135시간, 현장 증거물 수색·채증 등 관련 서류작업에 2.356시간이 소요된 것으로 추정되었다.

검거 후 관계자 조사 단계에서는 피의자조사에 6.680시간, 공범 및 상하선 등 조사에 7.316시간, 참고인조사에 3.596시간, 피해자조사의 경우는 거의 없으나 약 0.865시간으로 나타났다. 검거 후 압수된 증거물 등의 처리 업무로서 우선 생체시료 및 압수물의 감정의뢰(감정의뢰서 및 회신결과보고 등 서류업무 시간 포함)에 4.598시간, 압수물의 보관·폐기(압수물 보관·폐기 관련 등 서류업무 시간 포함)에 4.072시간이 소요되었다.

피의자의 신병 처리와 관련된 업무로서 구속 전 유치장 입·출감에 4.315시간, 구속영장신청에 2.744시간, 구속영장집행(미집행 시 조치, 집행정지·취소, 석방 등 관련 업무 포함)에 3.436시간이 걸린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해당 사건에서 팀장의 서류검토, 수사방향 제시, 외근시 동행 등 수사지휘 시간은 5.747시간으로 나타났다.

끝으로 수사 마무리 단계에서 최종 수사서류의 작성·검토 등 송치서류의 정리에 7.420시간, 피의자의 검찰송치(신병호송)에 3.605시간이 소요된 것으로 추정되었다.

이상에서 살펴본 세부업무별 소요시간 추정을 통해 마약류 사건 1건당 소요되는 총 시간을 보면 평균 181.369시간(피의자 1인 기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마약수사 업무 가운데서도 각 세부업무별로 보았을 때 가장 많은 시간이 소요된 것은 검거를 위한 추적수사활동 단계에서 특히 외근에 의한 탐문·감시(15.641시간)와 통신수사(13.780시간)였다. 그 다음으로는 검거 전 수사자료의 분석(9.778시간), 정보원으로부터 첩보수집(8.892시간), 외근에 의한 첩보내사(8.537시간), 현장이동 및 검거(8.483시간)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마약류 사건 1건당 소요되는 업무량을 관서별(지방청 수사대, 경찰서 마약팀)로 보면 지방청 수사대의 경우 평균 182.805, 경찰서 마약팀의 경우 179.298시간으로 지방청 수사대가 약간 큰 것으로 나타났으나, 실질적으로 두 집단 간에 거의 차이가 없었다. 이는 관서 유형에 관계없이 마약수사가 대체로 인지수사에 기초한 팀 단위 수사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마약류 사건을 유형별로 보면, 향정신성의약품 사건이 가장 큰 183.429시간이 소요되고, 다음으로 대마 180.602시간, 마약 121.776시간의 순으로 나타났다. 필로폰 등 향정사건은 대마사건과 함께 전체 소요시간 평균과 거의 차이가 없었으나, 양귀비와 같은 마약사건은 타 유형에 비해 소요시간이 적은 특징을 보이고 있다.

〈논문접수 : 2018. 11. 12, 심사개시 : 2018. 11. 19, 게재확정 : 2018. 12. 11.〉

참 고 문 헌

I. 국내문헌

1. 단행본

- 경찰청, 마약류범죄 수사매뉴얼, 2015. 10.
- 경찰청, 마약류범죄수사의 이해, 2015. 11.
- 경찰청, 2017년도 주요 업무계획, 2017. 1.
- 이윤 외, 경찰수사론, 경찰대학, 2012.
- 정웅, 경제팀 적정 업무량 분석(연구보고서), 치안정책연구소, 2012.
- 정웅, 관악서 시범 「성폭력 전담수사팀」의 직무분석(연구보고서), 경찰청 미간행 보고, 2013. 9.
- 정웅, 원스톱 지원센터 표준 직무모형 개발(연구보고서), 치안정책연구소, 2014a.
- 정웅, 경찰의 보험범죄 대응실태와 수사역량 제고방안(연구보고서), 치안정책연구소, 2014b.
- 정웅, 전화금융사기 근절을 위한 경찰의 수사역량 강화방안-수사 업무량 및 착안점을 중심으로(연구보고서), 치안정책연구소, 2015.
- 정웅, 경찰서 경제팀의 운영성과 분석 및 수사체제 개선방안(연구보고서), 치안정책연구소, 2016.
- 정웅, 경찰서 사이버수사팀 업무량 분석(연구보고서), 치안정책연구소, 2017a.
- 정웅, 직무분석을 통한 경찰 마약수사전담팀 적정 인력 산출(연구보고서), 치안정책연구소, 2017b.
- 주학중 편, 2000년대 경찰행정발전방안, 한국개발연구원, 1992.

2. 논문

- 정웅, “경찰서 경제팀 적정 업무량 분석”, 치안정책연구, 제27권 제1호, 2013.
- 정웅, “성폭력 전담수사팀의 업무량 분석과 적정 업무모형 : 강력팀과의 비교”, 치안정책연구, 제28권 제1호, 2014.
- 정웅, “원스톱 지원센터 여성경찰관의 피해자 조사 업무량 분석”, 치안정책연구, 제29권 제1호, 2015.
- 정웅, “경찰 보험사기 전담수사팀의 수사 업무량 분석”, 한국치안행정논집, 제12권 제3호, 2015.

3. 기타

- 경찰청 수사국, “마약류범죄 통계”, 2017. 4.
- 경찰청 수사국, “17년 상반기 사이버범죄 통계 분석”, 2017. 7. 17.
- 경찰청 수사국, “17년 양귀비·대마 특별단속 결과”, 2017. 8. 11.
- 경찰청 수사국, “마약수사전담 수사관 인력 현황”, 2017. 9.
- 경찰청 수사국, “마약류 사범 단속 현황”, 2018. 2.

II. 외국 문헌

1. 단행본

- Eide, Erling, Rubin, Paul H., and Shepherd, Joanna M., *Economics of Crime*, Hanover : now Publishers Inc., 2006.
- Winter H., *The Economics of Crime : An introduction to rational crime analysis*, New York : Routledge, 2008.

2. 논문

- Aitken, C., Moore, D., Higgs, P., Kelsall, J., & Kerger, M., “The

impact of a police crackdown on a street drug scene :
Evidence from the street”, *International Journal of Drug
Policy*, Vol. 13, Issue 3, 2002.

Becker, Gary G., “Crime and Punishment : An Economic Approach,”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Vol. 76, No. 2, 1968.

3. 기타

United States Dept. of Justice, “Law enforcement officer arraigned for
compromising drug investigation”, [https://www.dea.gov/
press-releases](https://www.dea.gov/press-releases)(2018. 11. 7 검색)

United States Dept. of Justice, “Organizational Chart”. [https://www.
justice.gov/agencies/chart](https://www.justice.gov/agencies/chart)(2018. 11. 7 검색).

United States Dept. of Justice, “DEA Mission Statement”, [https://www.
dea.gov/about/mission.shtml](https://www.dea.gov/about/mission.shtml)(2018. 11. 7 검색).

< ABSTRACT >

A Study on the Workload of Drug Investigation Team in the Police

Chung, Woong

The aim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workload of drug investigation team in the police from the perspective of investigation process, which is expected to make a fundamental contribution toward building up a standard manpower model for effective response against increasing drug crime.

According to the results of estimation based on the survey to the team of local police agency and police station nationwide, the average time to require in the preliminary investigation stage is turned out to be 7.366 hours in the intelligence collection activities outside of the office, 5.640 hours inside of the office, 2.396 hours in intelligence collection document filing.

In the next, the time to require in the principal investigation stage is estimated to be 13.780 hours in the communication tracking investigation to begin with, 15.641 hours in questioning and watch around criminals, 4.719 in undercover operation. The time to require in analysis of evidential matter is estimated to be 9.778 hours, 8.435 hours in analysis document filing. And the time to require in the cooperative investigation is estimated to be 2.071 hours in the international cooperative investigation, 2.778 hours in the domestic cooperative investigation.

Besides, the time to require to arrest criminals is estimated to be

hours 1.923 in the preparation of moving to the scene of crime, 8.483 hours in the moving to the scene, the document filing of scene evidence. After the arrest of criminals it is estimated to be 6.680 hours in the investigation to criminal suspects, 7.316 hours to accomplices, 3.596 hours to testifiers, 0.865 hours to victims.

Finally, the time to require in the finishing stage is 7.420 hours in document filing for dispatch, and in suspect transport. To sum up, the total time to the drug crime investigation is estimated to be 181.369 hours for person.

Considering the type of the police, the required time of local agency drug investigation team is shown to be 182.805 hours which is a little longer than 179.298 hours of the police station, but it makes no difference. That's because drug investigation is generally conducted on the base of investigator perception and team investigation, without the type of the police.

◆ **Key words** : Drug Crime, Drug Investigation Team, Investigation Process, Investigation Workload